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시행 2009. 6.18] [대통령령 제21422호, 2009. 4.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공증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7]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격이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천달러 상당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 목적의 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미화 천달러 상당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천달러 상당금액마다 미화 6달러 상당금액을 가산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3조 (법률행위목적가액의 산정방법)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4조 (목적가액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가액을 미화 500달러 상당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미화 500달러 상당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9.15]

제5조 (승인증서 등의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2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1. 승인·허가 또는 동의
2. 당사자 쌍방이 이해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3. 유언의 전부 또는 부분적 취소
4.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제6조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8달러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7조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12.31>

제8조 (수개 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9조 (위임장 등) 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10조 (인증행위) 인증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각종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11조 (「상법」 상의 정관의 인증 <개정 2009.4.17>) 「상법」에 따른 정관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20달러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12조 (사서증서의 확인일자) 사서증서에 확인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미화 1달러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제13조 (집행문 부여)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미화 4달러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14조 (증서정본 등의 교부)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매당 미화 40센트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15조 (확인)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미화 4달러 상당금액으로 한다.

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9.4.17>

제16조 (수수료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 수수료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 규정한 사항중 그 사항에 가장 비슷한 사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공증업무중지 등) 촉탁인의 청구 또는 촉탁인 및 열석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증업무를 중단 하였거나 완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미화 2달라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제18조 (촉탁인이 수인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수인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의 청구) ①영사관은 촉탁받은 공증업무를 완결한 후에 한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관은 수수료의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 ①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제21조 (계산서의 교부) ①영사관은 수수료를 촉탁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조항을 지적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미불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① 이 영의 시행에 있어서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은 재외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국가에 수개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때에는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②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외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7]

부칙 <제21422호, 2009. 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증을 촉탁한 것부터 적용한다.